

신청인/원고: 피신청인/피고: 기타 부모/당사자:	정보 제공 전용	사건 번호: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법원의 추가 명령

6. b. **의무적 추가 아동 양육비**

- (1) 고용 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업 훈련과 관련된 자녀 돌봄 비용
- (a) 신청인/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자녀 돌봄 비용.
 - (b) 피신청인/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자녀 돌봄 비용.
 - (c) 기타 부모/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자녀 돌봄 비용.
 - (d)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(자세히 명시할 것):

c. **의무적 추가 아동 양육비**

- (2) 자녀의 합리적인 비보험 의료 비용
- (a) 신청인/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b) 피신청인/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c) 기타 부모/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d)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(자세히 명시할 것):

d. **추가 아동 양육비**

- (1) 자녀의 교육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와 관련된 비용
- (a) 신청인/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b) 피신청인/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c) 기타 부모/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d)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(자세히 명시할 것):
- (2) 면접교섭을 위한 이동 비용
- (a) 신청인/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b) 피신청인/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c) 기타 부모/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: 총 금액의 % 또는 \$ 의 매월 지급.
 - (d)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(자세히 명시할 것):

e. **비지침 명령(Non-Guideline Order)**

본 명령은 가족법 섹션 4055에 명시된 아동 양육비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*비지침 아동 양육비 판단 첨부 문서 (양식 FL-342(A))*가 첨부되어 있습니다.

월별 아동 양육비 총액: \$

7. **의료 비용 지출**

- a.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은 신청인/원고 피신청인/피고 기타 부모/당사자 가 각자의 고용처 또는 자영업을 통해 무료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양 당사자에게 의료 비용 청구(health-care claims)의 제시, 징수 및 상황에 협력할 것을 명령합니다.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명령받은 부모는 아동이 더 이상 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연령에 도달한 후,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상, 질병 또는 상태 때문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주로 지원 및 유지를 위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, 아동의 보험 보장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
- b. 현재 신청인/원고 피신청인/피고 기타 부모/당사자 는 본 기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c.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상환 받을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해야 합니다.

8. **소득 양도**

소득 양도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. **참고:**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양육비 지급이 지급인의 임금에서 공제될 때까지 수령인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그러한 양도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.

신청인/원고: 피신청인/피고: 기타 부모/당사자:	정보 제공 전용	사건 번호: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9. 양육비를 받는 당사자와 민간 아동 양육비 징수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당사자는 민간 아동 양육비 징수자가 부과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 이 수수료는 기한이 경과한 부양료 총액의 33과 1/3 퍼센트(33 1/3%)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민간 아동 양육비 징수자가 청구한 수수료의 5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본 조항에 의한 금전적 판결은 민간 자녀 양육비 징수자와 양육비를 받는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됩니다.

10. **취업 탐색 명령(가족법 § 4505)**
 신청인/원고 피신청인/피고 기타 부모/당사자 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취업을 탐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:

11. **기타 명령(자세히 명시할 것):**

12. 통지

- a. **권리 및 책임 통지(의료 비용 및 상환 절차) 및 아동 양육비 명령 변경에 관한 정보 시트(양식 FL-192)**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본 명령에 편입되었습니다.
- b. 본 양식이 **심리 후의 금지 명령(양식 DV-130)** 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, 본 양식(양식 FL-342)에서 발부된 양육비 지급 명령은 양식 DV-130에서 내려진 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.

13. 아동 양육비 사건 등록 양식

당사자들은 본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**아동 양육비 사건 등록 양식(양식 FL-191)** 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그 이후, 제출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갱신된 양식을 제출하여 변경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.

주의: 아동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당사자는 현재 연간 10%인 법적 요율로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.

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.